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전호계속)

- 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 폐사연월일(불명시는 추정연월일) 또는 살처분연월일
마. 폐사 또는 살처분의 원인과 장소
바. 사체의 상태
사. 해부의 주요소견
- 제14조(신고)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등에 관한 신고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의사의 수급상황을 파악하거나 기타 동물의 질료시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경우에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신고기간·방법·절차 기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되, 공고는 신고개시일 3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수의사는 사망하거나 실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호적법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 또는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를 청구한 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면허증(일어버린 경우에는 면허증3호서식에 의한 분실경위서)을 첨부하여 그 사망 또는 실종신고일부터 30일이내에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회의 회장(이하 "수의사회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동물병원의 개설신고) ①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신고자외에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의사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에 대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동물병원의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뒷면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6조(동물병원의 개설허가) 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고자 하는 수의사에 대한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3. 법인의 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②도지사는 동물병원의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자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대장 및 허가증의 뒷면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관리수의사)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의사(이하 "관리수의사"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동물병원의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진료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는 수의회가 정한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이를 정한다.
②수의사회의 지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동물병원개설자는 이를 동물병원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질병진료 실적보고) 동물병원개설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동물질병진료실적보고서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수의 준수사항)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수의는 다음과 같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배치지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
2. 업무구역안을 월 2회이상 수노하여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치료

- 및 검진을 할 것
3. 동물을 진료할 때에는 질병의 성상 및 발생경위등을 조사·연구할 것
4.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
- 제22조(공수의의 업무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 비도덕적 진료행위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국·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하는 행위
 - 다른 동물병원으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25조(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반납) ①동물병원개설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동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신고 또는 허가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의 정지처분인 때에는 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의 뒷면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 제26조(수의사연수교육) ①수의사회 회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의 대상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하고, 그 대상자는 매년 10시간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연수교육의 교과내용·실시방법 기타 연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 회장이 정한다.
④수의사회 회장은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수의사회 회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계획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7조(보고) 도지사는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한 때 기타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자체없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수수료) ①수의사의 면허수수료 및 수의사국가시험응시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수수료: 3천원
 - 면허증제부 및 재부여 수수료: 2천원
 -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세입징수관사무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면허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수의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본다.
- 제3조(수의사면허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수의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사진(신청일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점면·상반신 반영함) 1매
- 제4조(동물병원관리수의사등의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관리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1일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동물병원개설자로서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두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1일내에 제15조제1항본문후단,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진료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의사회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보수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회의 지부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한 동물병원의 진료비로 보되, 수의사회의 지부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진료비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의사연수교육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수의사회 회장은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1995년도 수의사연수교육계획을 1995년 2월 28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199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